

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45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5년 3 월 일
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□ 개정이유

- 감면조례 제5장 서민주택건설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5조중
 -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관청의 명칭 변경 관련 조문과
 - 주택조합의 신탁등기와 관련 과세면제의 내용중 불합리한 점을 정리코자 하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건설부장관 →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명칭 변경
-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주택조합명의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
 - 조합은 현행 조례대로 면제하되,
 - 신탁종료 또는 해지로 인해 조합원 명의로 이전시에는 취득세, 등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
 - 납세의무의 성립은 조합원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때로 함

□ 근거법령 : 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

□ 기타참고자료 : 별첨

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제1항 본문중 "건설부장관"을 "건설교통부장관"으로 하고, "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"를 "경우(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)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주택조합이 신탁등기를 함으로써 과세하는 때에는 조합원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때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감면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한다"로 한다.

부

칙

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